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6월 17일

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 인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분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10명에서 1,552명으로 42명 증원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82명 → 1,524명(+42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8명(변동없음)

○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
- 정무직 : 1명(변동없음)
- 일반직 : 1,157명 → 1,200명(+43명)
 - 3급 : 1명(변동없음)
 - 4급 : 10명(변동없음)
 - 5급 : 76명 → 77명(+1명)
 - 6급이하 : 1,070명 → 1,112명(+42명)
- 연구직 : 2명(변동없음)
- 지도직 : 33명(변동없음)
 - 지도관 : 3명(변동없음)
 - 지도사 : 30명(변동없음)
- 기능직 : 290명 → 289명(△1명)
- 별정직 : 27명(변동없음)

○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

- 종류별 정원채정기준

구분	일반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
현행	<u>78%이상</u>	<u>20%이내</u>	2%이내
조정	<u>79%이상</u>	<u>19%이내</u>	2%이내

-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-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행	<u>3%이내</u>	<u>10%이내</u>	<u>16%이내</u>	33%이내	<u>38%이상</u>
조정	<u>4%이내</u>	<u>13%이내</u>	<u>19%이내</u>	33%이내	<u>31%이상</u>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는
 - 기존의 총정원 1,510명에서 1,552명으로 42명 증원하고,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, 집행기관의 정원을 1,482명에서 1,524명으로 조정 하였음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은
 - 정무직, 연구직, 지도직,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, 일반직은 1,157명에서 1,200명으로 43명(5급 1, 6급이하 42) 증원하고 기능직은 290명에서 289명으로 1명 감하였음
-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
 - 일반직을 79%이상으로, 기능직·고용직은 19% 이내로 조정하고 별정직·정무직(2%이내)은 변동없음

-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

- 기능직공무원의 6급은 4%이내, 7급은 13%이내, 8급은 19%이내, 10급은 31%이상으로 조정하고, 9급(33%이내)은 변동없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관련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시책 인력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